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신 청 일	년 월 일 신청		승 인 일	년 월 일 승인		
신청자성명	(인)	사 번			인사과	BU장
소속 법인		브랜드				
부 서		입 사 일				
퇴 직 금 정 산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대 출 금 현 황		새마을금고	원	회사대출	원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구체적 기록)**

*** 퇴직금 중간정산 원칙**

1. 중간정산은 개별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양측이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2.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전체근속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기간의 퇴직금은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3.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며 누진율의 경우도 새롭게 적용됩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 (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월차유급휴가, 복리후생 등)에서는 변동이 없이, 최초 입사일 기준 적용됩니다.